

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2022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2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699백만원에서 1,337백만원으로 638백만원 증가하였고,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240백만원에서 878백만원으로 638백만원 증가하였음
- 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,144	1,782	638
예탁금회수	0	0	-
예치금회수	699	1,337	638
이자수입	176	176	-
기타수입	269	269	-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,144	1,782	638
비용자사업	801	801	-
용자성사업	100	100	-
기본경비	3	3	-
예치금	240	878	638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유형 (☎ 2133-7407)